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15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의원)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해저조광권이란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이루어짐¹⁾.

현행법 제19조의²⁾는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등³⁾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제1항제1호)하거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를 의미함.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 예외 사유 이외에도, 해저조광권자가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여 구축한 해양 플랜트 등 고가 설비자산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시설⁴⁾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3년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은 동해폐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Carbon Capture and

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 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Storage)⁵⁾ 통합 실증사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후 저장소 확보 결과에 따라 단계별 규모 격상을 통해 동해 및 서해 대륙붕에서 대규모 CCS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⁶⁾ 하였음.⁷⁾

이에 상응하여 2024년 2월 6일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중 하나로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를 명시한 바 있으며,⁸⁾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기존의 석유·가스 인프라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해외 입법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5)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대량 배출하는 산업시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 지하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 및 기술을 의미함 (한국석유공사 사업소개 참조)

6)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4. pp.88

7) 다만,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재검토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를 요청한 바 있고,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을 이어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26년 2월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8)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해외 입법 사례: 기존 인프라의 CCS 시설 전환 관련

국가명	내용
네덜란드	Mining Act : 광업 시설 사용 종료 시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체 또는 재사용 계획을 정부 승인 하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캐나다	Mines and Minerals Act : 석유·가스 인프라를 CO ₂ 저장 용도로 전환 가능
노르웨이	Regulations on Exploitation of Subsea Reservoirs for CO ₂ Storage (2020) : 해저 CCS 저장소 탐사·개발·운영 시 정부 승인 하에 기존 인프라의 활용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해상풍력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기존의 가스 생산 플랫폼을 해상변전소로 재활용하고, 플랫폼 인근에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배치하여 연간 78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임.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규모	2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정부지	울산항 동측 58km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반경 5km 해역
사업기간	(준비 및 건설) 2023~2030년, (운영) 2031~2050년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동해-1 가스전의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7월⁹⁾ 종료 예정인바, 현행법에 따르면 채취권의 종료에 따라

9) 당초 동해-1 가스전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 7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되어 2026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가스전 관련 해양플랜트 등 플랫폼을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해저조광권 효력 소멸 시점에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시설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철거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9조의2제1항제5호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인공구조물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는 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개념상 기존의 해양광물 자원 개발사업이나 친환경에너지와 관련이 낮은 에너지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음. 즉, 개정안의 위임입법에 따

7월까지로 변경되었음.

른 시행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공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반감되고, 원상회복의 무 면제에 따른 기존 해저조광권자의 이익만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임입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전환 용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별도의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탄소중립의 실험, 해양·지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 해양환경 보전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개정안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된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해당 의무를 새로운 시설물의 관련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먼저 현행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해

저조광권자가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의 조광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회복의 무가 다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것임. 또한, 제2호에 따라 인공구조물등이 국가로 귀속¹⁰⁾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원상회복 의무 또한 함께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달리, 안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관련 시설로 사용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된 이후 해당 시설물 사용 용도가 종료되는 경우, 인공구조물등을 최종적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책임이 새로운 시설물 관련 사업자에게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원상회복 대상 시설물의 범위,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의무이행 방식 또한 개정안 문언만으로는 예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¹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폐

1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1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해저조광권자로부터 이전받은 인공구조물등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업자와 관계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문언은 새로운 시설물 관련 사업자가 반드시 기존 해저조광권자와 다를 것을 요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고려하면 기존 해저조광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로의 용도 전환을 받아 형식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고,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여 원상회복 비용만을 절감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승인 시에,

-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시설물의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이 종료되고 난 후 원상회복 필요성이 사후에 발생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관련 의무이행 방식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해저조광권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 시 원상회복의 이행 방식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담 주체의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시설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기여를 목적으로 활용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원상회복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이 탄소중립 실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를 “제1호 및 제2호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활용”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 ----- ----- ----- ----- ----- ----- ----- ----- ----- --. ----- <u>제1호 및 제2호는</u> ----- ----- ----- <u>경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u>

1.2. (생략) <u><신설></u>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3. <u>해당 인공구조물</u> <u>등이 「이산화탄</u> <u>소 포집·수송·</u> <u>저장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제2</u> <u>조에 따른 포집,</u> <u>수송, 저장 또는</u> <u>활용시설로 전환</u> <u>하여 사용되는 경</u> <u>우</u> 4. <u>해당 인공구조</u> <u>물등이 「신에너</u> <u>지 및 재생에너</u> <u>지 개발·이용·</u> <u>보급 촉진법」</u> <u>제2조에 따른 신</u> <u>에너지 또는 재</u> <u>생에너지를 이용</u> <u>하는 발전사업에</u>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요건을 충족</u> <u>하여 산업통상부</u> <u>장관의 승인을 받</u> <u>은 경우에-----</u> <u>-----.</u> 1. ~ 3. (개정안과 같음) 4. <u>「해상풍력 보</u> <u>급 촉진 및 산업</u> <u>육성에 관한 특</u> <u>별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해상</u> <u>풍력발전사업 관</u> <u>련 시설로 전환</u> <u>하여 사용-----</u> <u>--</u>
---	---	--

<u><신 설></u> ② · ③ (생 략)	<u>활용 되는 경우</u> <u>5. 그 밖에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에</u> <u>너지 · 자원 개발</u> <u>사업으로 활용될</u> <u>필요가 있는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 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과 원상회복 의무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u>
<u><신 설></u>	4. <u>「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u>

<신 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및 제4항-----

-----.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공 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